

취업여성 느나 '모성보호정책' 제자리

여성단체연합·노총 여성국 토론회

취업여성수는 날로 늘어나고 있으나 모성보호정책은 미흡하기 짝이 없고, 87년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여성단체연합과 노총 여성국은 20일 '여성해방과 모성보호 토론회' '남녀고용평등법 정착 토론회'를 각각 열고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여성의 모성보호문제 △채용에 따른 남녀차별문제와 개선책 등을 집중논의했다.

경제기획원 조사에 의하면 90년 2월 현재 여성취업자는 8백46만2천명으로, 전체취업자의 약 36%를 차지한다.

이는 80년 14.5%, 88년 28%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지만 여성취업률은 매우 좁아 디자인·교육직·경리직·주부사원·상담원·사무직·생산직 등 한정된 직종에 종사하고 있고, 안정되고 대우가 좋은 곳일수록 여성에게 배타적이다.

이에 덧붙여 기혼여성에 대한 산전산후 휴가, 유산휴가, 시간의 노동금지 등 모성보호정책은 미약하기 그지없다.

이에 따라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월간 <일하는 여성> 9월호에 모성보호를 위한 12가지 과제를 제시, 모성보호제도 수립 및 시행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일하는 여성>에 제시된 12가지 과제는 △생리휴가 월1일 확보 △산전산후 유급휴가 12주

확보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의 규제 △임신중단 여성노동자를 위한 보호조치 제정 △출산시 남편에게 최소 1주일의 휴가 △10일 이상의 유산휴가 △매일 1시간30분 이상의 육아시간(수유시간) 확보 △12개월의 유급 육아휴직 △정부와 기업의 탁아소 등 육아시설 설치 △여성노동자의 위험·유해작업금지 △여성노동자의 시간외 노동·야업 교대제 근무 금지 △사무 및 공장의 자동화·합리화로 인한 노동강도 강화에 대한 규제 등이다.

여연이 주최한 '여성해방과 모성보호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사무직이든 생산직이든 취업여성들은 모성보호차원의 충분한 제도적,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고용차별금지·산전산후 휴가확대등 방안 시급 전체의 36%...경리직등 한정직 종사

한 장필화(이대·여성학)교수는 "모성보호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녀 모두의 문제이자 사회 전체의 문제이므로 여성들이 맘놓고 일할 수 있도록 국가가 법과 제도로 보장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하고 "여성들 또한 이 권리를 적극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성보호는 '어머니의 입장과 아이의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전제한 지은희(덕성여대강사·사회학)씨는

△60일 이내로 돼 있는 산전산후 휴가를 최소한 14주로 늘리고 △자녀가'아플 때 간호에 필요한 유급휴가를 주고 △출산을 전후한 실직위험 방지책 마련 △국가와 고용주, 지방자치단체들이 합동으로 사회복지기금을 마련, 모성보호를 책임지는 방안 등이 연구·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씨에 따르면 유럽의 평균 출산휴가는 5개월이다.

스웨덴은 여기에 출산수당과 남편의 10일간 유급휴가가 덧붙

여지며, 소련의 경우 산전산후 휴가 16주를 포함해 18개월의 모성휴가가 주어진다. 또한 북한에선 산전산후 휴가 1백50일에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1일 노동시간을 6시간으로 한정, 가정과 직장생활의 양립을 배려해주고 있다.

'생산직 여성노동자와 모성보호' 문제를 제기한 한국여성노동자회 한명희 부회장은 "사무자동화 이후 분·초단위로 체크되는 노동강도강화, 이렇듯 모르는 유

해 약제를 쓰는 작업장에서 일하는 생산직 여성노동자들의 모성 파괴 실상은 엄청나다"면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사무직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문제를 짚은 김영주(서울신탁은행 노조 정책연구 2실장)씨도 △유·사산에 대한 휴가제도 도입 △출산육아 휴직제 도입 △직장내 탁아시설·운영 등의 모성보

호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총 여성국이 마련한 '남녀고용평등법 정착 토론회'에서는 "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으로 모집과 채용에서 남녀차별이 금지되었지만 아직도 고용상황은 여성에게 매우 불리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선 여성에게 남성과 마찬가지로 넓은 취업기회가 주어지기 위해선 △남성위주의 노동시장에 뿌리깊이 박혀있는 남녀차별의 벽을 허무는 방안 △여성노동자에 대한 해고와 불완전 고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 등이 여성계를 중심으로 체계있게 연구돼야 한다고 강조되었다.

<신연숙 기자>